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8
----------	------

발의연월일 : 2025. 10.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 1.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 금융회사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안 제3조~제5조)
- 나. 피해 예방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이용자로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

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 등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기 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4.2.27. 일부개정, 2024.8.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안 제6조)으로 추진되는 홍보·교육 및 민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안 제7조·제8조)에 따른 위탁수행 비용 및 정산 관리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은 주로 홍보·교육, 민관협력 등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보조금 지원 및 위탁사업은 대상 법인·단체의 선정, 지원 규모와 방법, 정산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 산출이 곤란함.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해당하며, 현 시점에서는 재정 부담을 특정하기 어려움(안 제6조~제8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신 달 호 (☎ 2049)